



# CIRCULAR

36 Myeongji ocean city 9-ro,  
Gangseo-gu, Busan, 618-814  
Republic of Korea

Phone : +82-70-8799-8802  
Fax : +82-70-8799-8419  
E-mail : dykimm@krs.co.kr  
Person in charge : Kim DoYoung

To : 전 검사원 및 관련업체

No : 2020-6-E  
Date : 2020.07.23

제 목 (Subject)	9.135 원격사이버보안 검사 요구사항 추가
적 용 (Application)	2020년 8월 1일 (검사신청일 기준)

1. 선급기술규칙 제/개정 요청사항을 반영하여, 해상 사이버보안 시스템 지침을 아래와 같이 개정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, 관련 업무에 적용하시기 바랍니다.
2. 아울러, 이 내용은 2021년 상반기 중 발행되는 2021년판 선급기술규칙에 반영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.

----- 아래 -----

첨부 : 해상사이버보안 시스템 지침의 개정사항(국/영문) --- 1부. (끝)

# 해상 사이버보안 시스템 지침 개정(안)

2020. 7.



기관규칙개발팀

2020.08.01.일자 시행사항

(검사신청일 기준)

현행	개정안	개정사유
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b>제 1 장 일반사항</b>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b>제 1 절 일반사항</b></p> <p><b>101. 일반사항</b>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이 지침은 정보기술(IT)이나 운영기술(OT)을 운용하여 사이버보안 시스템을 갖춘 회사 또는 선박에 적용한다.</li> <li>2. 이 지침은 사이버보안 시스템의 수준 및 그 수준에 해당하는 요건을 규정하며 적용하고자 하는 범위는 선주의 요청에 의해 결정된다.</li> <li>3. 이 지침에서 규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<b>선급 및 강선규칙</b>의 각 해당 요건에 따른다. 다만, 사이버보안 시스템에 적용할 수 없는 요건은 제외한다.</li> <li>4. 이 지침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우리 선급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바에 따라 ISO, IEC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인정된 기준에 따를 수 있다.</li> <li>5. 본 지침의 규정 이외에 IMO 등 국제 규정에 따른 별도 요건이 있거나 정보기술 및 운영기술의 발전에 따라 우리 선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추가적인 고려사항 및 요건이 요구될 수도 있다.</li> <li>6. 이 지침은 회사나 선박의 사이버보안 시스템에 대한 최소한의 요건을 명시하고 있으며, 모든 사이버보안 사고를 방지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.</li> </ol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b>제 1 장 일반사항</b>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b>제 1 절 일반사항</b></p> <p><b>101. 일반사항</b>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이 지침은 정보기술(IT)이나 운영기술(OT)을 운용하여 사이버보안 시스템을 갖춘 회사 또는 선박에 적용한다.</li> <li>2. 이 지침은 사이버보안 시스템의 수준 및 그 수준에 해당하는 요건을 규정하며 적용하고자 하는 범위는 선주의 요청에 의해 결정된다.</li> <li>3. <u>원격검사를 적용함에 있어 선박에 적용할 수 있는 모든 국제협약 및 기국법 및 기항지의 국내법 등을 만족함을 기본으로 한다. (2020)</u></li> <li>34. 이 지침에서 규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<b>선급 및 강선규칙</b>의 각 해당 요건에 따른다. 다만, 사이버보안 시스템에 적용할 수 없는 요건은 제외한다.</li> <li>45. 이 지침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우리 선급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바에 따라 ISO, IEC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인정된 기준에 따를 수 있다.</li> <li>56. 본 지침의 규정 이외에 IMO 등 국제 규정에 따른 별도 요건이 있거나 정보기술 및 운영기술의 발전에 따라 우리 선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추가적인 고려사항 및 요건이 요구될 수도 있다.</li> <li>67. 이 지침은 회사나 선박의 사이버보안 시스템에 대한 최소한의 요건을 명시하고 있으며, 모든 사이버보안 사고를 방지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.</li> </ol>	<p>(신설)</p> <p>- 시간, 공간적 제약으로 검사원이 입회하지 못하는 경우, 원격검사를 수행하기 위해 요건을 신설함.</p>

현행	개정안	개정사유
<p>102. 용어의 정의</p> <p>용어의 정의는 여기에 별도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<b>선급 및 강선규칙</b>에 따른다.</p> <p>1. - 18. &lt;현행과 동일&gt;</p> <p>103. - 105 &lt;현행과 동일&gt;</p>	<p>102. 용어의 정의</p> <p>용어의 정의는 여기에 별도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<b>선급 및 강선규칙</b>에 따른다.</p> <p>1. - 18. &lt;현행과 동일&gt;</p> <p><b>19. “원격사이버보안검사(Remote Cyber Security Survey)”이라 함은</b>  <u>회사나 선박의 사이버 시스템 검사 시 검사원이 직접 입회하여 검사하는 대신에 우리 선급이 회사나 선박 소유자가 제출한 전자파일 형태(사진, 비디오, 문서 사본 등)의 자료를 검토하고, 필요한 경우 회사 또는 선박과 통신하여 수행하는 검사를 말한다. (2020)</u></p> <p>103. - 105 &lt;현행과 동일&gt;</p>	<p>(신설)</p> <p>- 시간, 공간적 제약으로 검사원이 입회하지 못하는 경우, 원격검사를 수행하기 위해 요건을 신설함.</p>

현행	개정안	개정사유
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b>제 2 장 선급검사</b>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b>제 1 절 - 제 4 절 &lt;현행과 동일&gt;</b></p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b>제 2 장 선급검사</b>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b>제 1 절 - 제 4 절 &lt;현행과 동일&gt;</b>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b>제 5 절 원격사이버보안검사 (2020)</b></p> <p><b>501. 일반사항</b></p> <p><b>1. 회사 또는 선박에 대한 원격사이버보안검사는 원격사이버보안검사 신청이 있을 때 시행한다. 단, 검사원의 입회 제한 등으로 현장검사가 제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원격사이버보안검사를 연속으로 시행할 수 없다.</b></p> <p><b>2. 원격사이버보안검사 시 요구되는 자료나 조건이 충족되지 못하거나 우리 선급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검사원이 입회하는 검사가 시행되어야 한다.</b></p> <p><b>3. 회사나 선박의 소유자는 해당 현장 검사에서 요구하는 자료와 동등한 자료를 전자파일 형태(사진, 비디오, 문서 사본 등)로 제출하여야 한다.</b></p> <p><b>4. 필요한 경우, 우리 선급과 회사 또는 선박 사이에 실시간 화상 회의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이 제공되어야 한다. ↓</b></p>	<p>(신설)</p> <p>- 시간, 공간적 제약으로 검사원이 입회하지 못하는 경우, 원격검사를 수행하기 위해 요건을 신설함.</p>